1. 개정이유

이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선사수습생 전형 시험 및 도선사 시험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수수료를 필기시험, 면접시험 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본인사고·직계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도선구역 정비를 통해 안정적 도선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반환 규정 추가(안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승선선박의 항해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함

나. 수수료 현실화 및 구분 징수(안 제32조제1항 관련 별표 6)

현행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면접) 및 도선사 시험(면접, 실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5,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수수료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구분하여 각 20,000원으로 하고, 도선사시험의 수수료는 20,000원으로 정함

다. 도선구역 정비(안 제17조 관련 별표3, 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마산항 도선구와 통영항 도선구를 마산항 도선구로 통합하고, 마산항 도선구역 중 일부 수역의 오기를 정정하며, 별표 3 중 '강제도선에 관한 사항'을 별표 4로 이관하고, 새롭게 통합되는 마산항 강제도선구역(별표 4)에서 종전의 통영항 도선구역을 제외하며, 동해항 도선구역에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항만시설을 신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완료

4) 법제처 심사 전

해양수산부령 제 호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승선선박의 항해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별표 3 중 마산항 도선구 및 동해항 도선구의 구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통영항 도선구를 삭제한다.

마산항 도선구	진해시 명동 신명 남단을 기점으로 하여 우도 남동단, 연도 남서단, 말박도 서단, 양지암취 등대, 서이말 등대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목섬, 씨앗섬, 신수도북단, 신수도남단, 제7도선점(북위 34도52분07초 동경128도05분15초), 율포말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및 비진도 설품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동해항 도선구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옥계항 해상구역 북서단(북위37도37분35초 동경129도03분08초 및 북위37도38분10초 동경 129도04분43초), 옥계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8분10초 동경129도05분22초), 묵호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3분22초 동경129도08분12초), 동해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31분10초 동경129도10분22초), 삼척항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26분15초 동경129도12분07초), 삼척항 해상구역 남동단(북위37도25분50초 동경129도12분07초) 및 삼척항 해상구역 남서단(북위37도25분44초 동경129도11분37초)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속초시 북동방(북위38도12분48초 동경128도36분01초)으로부터 조도 동단을 거쳐 조도 남단과 북위38도11분35초 동경128도36분07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호산항비화진 돌출부(북위37도12분42초 동경129도20분52초)로부터 북위37도12분42초 동경129도22분36초, 북위37도08분42초 동경129도23분56초 및 고포측 돌출부(북위37도08분42초 동경 129도21분53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과 강릉안인화력발전소 해상구역 북동단(북위37도45분02.89초 동경128도58분18.35초)로부터 북위37도46분14.90초 동경129도00분07.15초, 북위37도45분12.94초 동경129도01분38.99초, 북위37도44분01.21초 동경 129도00분22.21초, 북위37도44분15.71초 동경128도59분18.37초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마산항 도선구. 다만, 비진도 설품단으로부터 오곡도 남단, 연대도 남단까지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수역은 강제도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삼천포항 수역은 선박규모에 관계없이 남동발전부두, 고성하이발전부두, 신항 4번 및 5번 선석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하며, 총톤수 1천톤 미만의 선박은 다음 각 목의 경우에만 강제도선 대상으로 한다. 가. 마산항 및 진해항 수역은 해당 항만의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나. 고현항 수역은 사두도 앞 해상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다. 옥포항 수역은 검역정박지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라. 지세포항 수역은 지심도 앞(북위 34도51분11초 동경 128도47분52초)으로부터 항내까지 입항 또는 출항하는 경우

별표 6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선수습생 전형시험(필기)	20,000원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면접)	20,000원
3. 도선사 시험	2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 이후부터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응시원서) ① (생 략)	**제14조(응시원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본인 사고 또는 질병, 직계가족 사망, 승선선박의 항해일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